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| |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|

제 1251 호 2020. 9. 3.(목)

규 칙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3호[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] 1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4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] 3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55호[하천 점용 허가(변경) 고시]..... 9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005호[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]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013호[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014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24

| | |
|-----|---|
| 안 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 |
|-----|---|

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| | | | | | | |
| 람 | | | | | | | | |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제안
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(인)

2020년 9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63호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제1조(「울산광역시 복구 제안 규칙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복구 제안 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기양양을 통하여”를 “사기를 드높임으로써”로 한다.

제2조(「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
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규칙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여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울산광역시 복구 제안 규칙(제1조)

- 사기양양을 통하여 → 사기를 드높임으로써

나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(제2조)

- 미연에 → 미리

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(인)

2020년 9월 3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4호

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도서관 회원증(이하 “회원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 받아야 한다. 다만, 노인, 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(회원증 재발급) 신청서 제출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.

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“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대출 회원가입(회원증 재발급) 신청서”를 “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(회원증 재발급) 신청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[앞면]

| 회원가입(회원증 재발급) 신청서 | | | | 결 | 담당자 | 담 당 | 과 장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|-------|--|---|-----|-----|----|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*회원종류(√ 표시) :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서관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책이음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회원 | | | | 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*성 명 | | *생년월일 | | *성별 | 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*주 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*휴대전화 | | | | *집 전 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소 속 (학교 직장 등) | | | | *문자서비스(SMS) 수신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안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*는 필수항목입니다. ※ 만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법 정 대리인 | 성 명 | 신청자와의 관계 | | 연락처(휴대전화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※ 가족ID부여번호(관리자용) : _____ 발급형태(가입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탈퇴 <input type="checkbox"/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성명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관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생년월일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대출자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동의(서명)</th> </tr> <tr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/tr> </table> | | | | | | | | 성명 | 관계 | 생년월일 | 대출자번호 | 동의(서명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성명 | 관계 | 생년월일 | 대출자번호 | 동의(서명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에 회원가입(회원증 재발급)을 신청하며,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 ※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동의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 청 인 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참고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원증 (재)발급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 등), 주민등록 등본(만 17세 미만) -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: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• 가족회원 신청 시 가족대표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. • 도서관회원증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• 책이음이용증은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•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. • 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,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• 가족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연체중 가족구성원이 있을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제한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【별지 제2호서식】 <삭 제>

(앞면)

회 원 증

성 명 :
 번 호 :

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회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(뒷면)

이 용 안 내

- 도서관 이용시 반드시 이 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.
-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도서대출은 통합 20권(1관당 최대 5권),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입니다.
- 도서관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- 본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도서관 이용시간
 - 자료실 : 09:00 ~ 20:00 ※명춘/뚜벅이 18:00까지 (토·일요일은 18:00까지)
 - 열람실 : 08:30 ~ 22:00 ※명춘 09:00 ~ 21:00 (토·일요일은 18:00까지)
- 휴관일은 월요일,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(다만,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)
- 자세한 이용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(<https://usbl.bukgu.ulsan.kr>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중 양 도 서 관 241-7407 | · 기 적 의 도 서 관 241-7420 |
| · 농 소 1 동 도 서 관 241-7430 | · 농 소 3 동 도 서 관 241-7440 |
| · 염 포 양 정 도 서 관 241-7450 | · 명 춘 어 린 이 도 서 관 241-7460 |
| · 뚜 벉 이 작 은 도 서 관 294-9956 | |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**1. 개정이유**

-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 회원 가입이 힘든 정보 취약계층(노인, 아동 등)에 대한 가입절차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,
- 회원가입 신청서와 회원증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HPIN 없는 정보 취약계층(노인, 아동 등)에 한하여, 도서관 방문 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으로 회원가입 가능하도록 개정(제5조제2항)
- 나.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 추가(별지 제1호서식)
- 다. 기존 구립도서관 회원전용 회원증 서식 삭제(별지 제2호서식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- 155호

하천 점용 허가(변경)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정 자 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김형입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 5길14(효문동)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토지의 점용(진·출입로 설치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신현동 120번지 일원

나. 면적 : 당초: 영구 15㎡

 변경: 영구 6㎡

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 당초 : 2017. 9. 13. ~ 2021. 12. 31.

 변경 : 2020. 8. 28. ~ 2021. 12. 31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-1005호

울산광역시 복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9월 3일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에 따라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다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·운용 및 심의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(안 제8조, 제9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참조: 기획예산 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사항

※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(우)44248
- 전화번호 : 052-241-7115
- 팩스번호 : 052-241-7109
- E-mail : she2011@korea.kr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
(<https://www.bukgu.ulsan.kr>) “고시공고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등)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

120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울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3.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황

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통합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
3.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
4.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
5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「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로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7조(이자) ①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- 1. 통합기금운용관 : 기획예산담당관
- 2. 통합기금출납원 : 예산담당

② 통합기금운용관 및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「울산광역시 복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- 1013호

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청년 제조업 창업공간」을 조성,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·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(안 제6조의2)
 -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
- 나.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(안 제6조의3)
 -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 및 입주방법 규정

3. 관계법령

가. 「청년기본법」 제18조

나. 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경제일자리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

2) 전화번호 : 052)241-7713, 팩스번호 : 052)241-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청년창업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의 발굴·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·기술개발 지원
2. 청년창업 제품 홍보·마케팅 지원
3.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
4.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
5.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 및 사무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의3(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) 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이거나 직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청년층인 창업기업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한다.

③ 입주요건, 모집 및 선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6조2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)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의 발굴·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·기술개발 지원</u> <u>2. 제품 홍보·마케팅 지원</u> <u>3.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</u> <u>4.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</u> <u>5.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<u>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 및 사무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6조3(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)</u></p> <p>① <u>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이거나 직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청년층인 창업기업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한다.</u></p> <p>③ <u>입주요건,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|

관계법령

□ 청년기본법

제18조(청년 창업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직업상담·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
3. 구인·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
4. 채용박람회 개최
5.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및 육성
6. 청년창업 지원
7.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조 례 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○ 성 명(단 체 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의 견 제 출

| 조례안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|------|----|-----|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- 1014호

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 일부개정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설정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교통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교통행정과

2) 전화번호 : 052)241-7962, 팩스번호 : 052)241-796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”을 “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7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<u>예비비로 상당한 금 액을</u>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| 제7조(예비비) ----- ----- ----- <u>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</u> ----- ----- |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의 견 제 출

| 조례안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|------|----|-----|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